# 피트인 영업용 전기차 배터리 관리 서비스 계약서

공급자 ㈜ 피트인 과 계약자 \_\_\_원종욱\_ 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명		피트인 영업용 전기차 배터리 관리 서비스	
서비스 기본 내용		EV 배터리 교체보상, 차량관제	
추가 특약 사항 (선택사항)		□ 영업용 전기차 배터리 보증수리연장	
계약일		2024- 07- 23	
계약 기간		2024- 07- 23 00: 00 ~ 2025- 07- 23 00: 00 (1년)	
계약자 정보		□ 법인 / ☑ 개인	
·	법인/개인명	원종욱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01094097035	
	주소		
차량/운전자 정보		경기53바4006 / 아이오닉 5 EV (롱레인지)	
서비스 가입	차량 수	1대	
매월 납부비용	용 ① + ② (VAT 포함)	42,900원	
	① 매월 서비스비용 (원)	39,000원	
② 안전운전점수 지원금 (원)		- (전년도 실적 보유 시 지원)	
납부일자		매월 25일	
납부방법		계좌 입금 (매월 자동 이체)	
중도해지수수료		1. 위약금: 월요금 X [(계약기간-사용기간)/계약기간(일)] 2. 단말기 탈거비 (50,000 원)	
단말기 설치 요청일/장소		2024-00-00 / 고객 지정 장소	

공급자 : 주식회사 피트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 대표이사 김 세 권 계약자 : 원종욱

대표이사

무를 구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주식회사 피트인(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피트인 영업용 전기차 배터리 관리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자'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계약'에 동의하고 '계약'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납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2. '운전자'란 차량관제단말이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피트인 영업용 전기차 배터리 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 란 아래 ①호와 ②호의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으로 전기차 운영 효율을 높이고 차량의 안전운전과 배터리 사고 시 비용절감을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① 교통사고/침수/주차/충전 중 사고로 인한 '전기차 배터리 교체 서비스 (이하 'EV 배터리 교체 서비스')
  - ② 계약자의 차량에 설치된 차량관제단말로부터 수집된 차량의 운행 정보 및 배터리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차량관제 서비스')
- 4. 'EV 배터리 교체/수리 비용 보장 서비스'란 '서비스' 가입 기간동안 사고 발생으로 교체/수리가 필요할 시 다른 EV 배터리로 교환을 통해 차량 운행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5. '차량관제단말'이란 '회사'가 '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자의 차량에 장착하는 OBD(On-Board Diagnostics: 자동차의 전기/전자적인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 규격) 단말기로서, 차량 및 배터리 데이터를 취득하고 전송하기 위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6. '배터리 정보'란 차량관제단말이 부착된 차량의 현재 배터리 건강 상태를 말합니다. 단, 배터리 건강 상태 정보는 차량관제단말이 설치된 차량의 주위 환경이나 통신 사정에 따라 그 정확도나 오차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7. '제휴 보험사'란 '회사'가 지정한 법인으로 제3항의 ①호 서비스 운영과 연계한 보험사를 말합니다.

- 8. '제휴 FM 사'란 '회사'가 지정한 법인으로 제 3 항의 ②호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9. '사이트'란 '서비스'의 계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https://pitin-ev.com)
- 10. '안전운전점수 제도'란 '운전자'가 약정기간 동안 '회사'가 제시한 기준의 안전 운전 조건을 달성함으로서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서비스' 비용의 일부로 지원됩니다.

#### 제 3 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 1.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발생 시 '계약'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 일자 15 일 전부터 '서비스'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 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 2. '계약자'는 정기적으로 사이트 및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계약'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계약'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계약자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는 변경된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 2 항에 따라 변경된 '계약'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계약자에게 '계약' 변경 적용 일까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계약자가 명시적으로 '계약'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계약자가 변경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4 조 (계약 외 준칙)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서비스' 공지, 이용 안내에서 정한 바에따라서 적용됩니다.

####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에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명	내용	사항	서비스 요약	
EV 배터리	EV 배터리 교체보상	기본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 차량의 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리퍼비시 배터리 교체 필요시(공임비 포함),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단, 배터리 성능 저하 등은 서비스에서 제외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20% 자기부담금(Min 20 만원/Max 50 만원) 적용)	
교체 서비스*	EV 배터리 보증수리연장	선택	배터리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해 성능, 기능상 하자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수리하는 서비스 (단, 배터리제조사 무상보증에 해당할 경우 등은 서비스에서 제외)	
	대시보드	기본	계약자가 소속된 회사의 차량들의 평균 안전점수, 실시 운행률 등 전반적인 관제 현황을 볼 수 있는 서비스	
	관제현황	기본 차량의 속도, 배터리 전압 등의 상태와 현재 그리고 이동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차량 관제	통계분석	기본	급가속, 급감속, 고속주행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을 분석한 안전운전 점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운행일지	기본	계약자가 소속된 회사의 차량의 운행시간, 차량번호, 이동거리 등 운행에 관련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장기고객 혜택	리퍼비시 배터리 구매 할인	추가	3 년 이상의 계약 이력이 있을 시, 신품성능과 유사한 리퍼비시 배터리를 시중가에 최대 25%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	

#### ※ 세부사항 별표 제 3 호 참조

- 2. '서비스'는 제 1 항의 기본 사항을 제공하며, 추가 선택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3. 제 1 항의 '서비스'는 정보 제공 '서비스'로 '회사'가 계약자에게 별도의 알림 '서비스'나 리포트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계약자가 직접 정보를 조회하여 원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계약자가 제 3 항의 정보 조회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제한)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동의하고, '회사'에서 제공된 '서비스' 계약양식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신청 필수 기재 항목(가입서비스명, 가입일, 가입기간, 계약자정보, 차량정보, 서비스 비용, 매월 납부비용, 납부일자, 납부방법, 중도해지수수료, 단말기 설치 요청일/장소 등)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3.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4.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고, 이용계약 성립 이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 중단 등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①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저작권법 기타 관련 법령과 '계약'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④ 계약자가 '회사'나 다른 계약자의 권리 및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⑤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⑥ 만 14 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①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거나 위법, 허위정보 제공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또는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승낙할 수 없는 경우
- 5. 'EV 배터리 교체 서비스' 보장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은 '별표 제 3 호'를 따른다.
- 6. '차량관제단말'의 설치장소 변경은 사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설치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서비스' 신청 시 제공된 것과 다른 차량관제단말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7.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 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점검 및 증설, 교체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 8. 제휴사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중지 시 '회사'는 계약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9.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및 증설, 교체, 국가 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 공지나 예고 없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 7 조 (계약 및 서비스 기간)

- 1. 기본 계약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자의 '서비스' 이용 기간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승낙이 있은 날로부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시까지입니다.
- 2.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서비스'의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 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알리고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제 8 조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1. '회사'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통하여 수집한 계약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과 관련 없는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계약자의 책임 하에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계약자가 위치정보를 이용계약의 목적 외로 부당하게 이용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운전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료요청에 대해 계약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회사'는 상기 제 1 항에 의거 계약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 법령에서 계약자의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 3 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 9 조 (위치정보의 처리 등)

1. '회사'에서 수집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 계약이 적용됩니다.

- 2. 계약자의 이용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차량의 위치정보는 최대 3 개월간 보관되며, 계약자가 이용계약 종료를 요청한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 3. 계약자는 언제든지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위치정보, 위치정보 이용 및 제 3 자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 4. '회사'는 운전자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중지를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5. 계약자는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①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 3 자 제공사실 확인자료
  - ② 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 3 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6.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한 운전자는 계약자에 대하여 동조 제 3 항에 따른 권리가 있으며, 계약자는 운전자로부터 동조 제 3 항에 따른 철회 요청을 받은 경우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7. '회사'는 계약자의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최대 6개월간 보관합니다.
- 8. '회사'는 계약자가 지정한 제 3 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매회 계약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 A. 위치정보를 수신한 당해 기기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B. 계약자가 SMS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 제 10 조 (계약자의 의무)

- 1. 계약자는 차량, 배터리 및 차량관제단말의 사고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주의 및 관리의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가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계약자는 이용계약 시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3. 계약자는 차량교체 및 대•폐차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교체 및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이를 고지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계약자는 현행법령에 위반되는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5. 계약자는 '서비스'를 악용하여 제 3 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 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6. '회사'는 동조 제 4 항 및 제 5 항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1 조 (ID 및 비밀번호 관리)

- 1.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서는 관리자당 2 개의 ID 부여가 가능하며, 비밀번호는 개별적으로 고지합니다. 그 이후에는 계약자가 사이트에서 직접 ID 를 입력하여 사용합니다.
- 2. ID 및 비밀번호는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ID 및 비밀번호 관리 소홀 또는 부정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3. '회사'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자를 정당한 계약자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한 자가 정당한 계약자인지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계약자의 ID 에 대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비밀번호 분실 시계약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여야 합니다.

### 제 12 조 (설치 및 유지보수 위탁)

'회사'는 차량관제단말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제 13 조 (비밀유지)

계약자와 '회사'는 이용계약으로 인해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제 14 조 (지식재산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공급하는 차량관제단말에 내재된 내부코드 및 제공 프로그램, 자료, 기술, 노하우,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회사'를 포함한 원 소유자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 제 2 장 안전운전점수 제도

#### 제 15 조 (혜택 기간)

'계약자'는 서비스 계약일로부터 1 년(12 개월) 경과 시, 계약 연장을 통해 안전운전점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지원금은 매월 납부비용에 적용되어 제공됩니다.

- ❖ 월 서비스 납부비용= 서비스 비용(1년)/12개월
- ❖ 안전운전 지원금 반영 시 = 서비스 비용(1년)/12개월 안전운전점수 지원금

#### 제 16 조 (안전운전점수)

- 1.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의 안전운전점수의 대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계약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월 누적주행거리, 급가속/급감속 횟수,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의 영업정책에 부합하는 요금제 및 약정기간으로 계약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은 직전 계약기간의 안전운전점수에 따릅니다.
- 3. '회사'는 영업정책 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이를 고지합니다.

#### 제 17 조 (지원금 지급 제외)

제 16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 '회사'의 동의 없이 차량관제단말등을 임의로 분해,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 2. '회사'의 정책상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 제 3 장 위약금

#### 제 18 조 (위약금 발생 및 납부)

- 1. 계약자는 약정기간(365 일) 종료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직권해지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명의변경(양수인이 의무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하는 경우 '회사'에게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제 1 항의 위약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 A. 피트인 영업용 전기차 배처리 관리 서비스 위약금 산정식
  - : 월요금 X [(계약기간-사용기간)/계약기간(일)]
- B. 안전운전점수 지원금 지급 시, 관련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추가됩니다.
- C. 안전운전점수 위약금 산정식 : 지원금 X [(계약기간-사용기간)/계약기간(일)]
- D. 사용기간은 '서비스'를 개시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제 19 조 (위약금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 제 18조 제 1항에 따른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1. 계약자의 사망 사유로 해지하거나 재해, 경영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파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계약자가 서비스 약정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단, 가입신청서 관련 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3.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요금제 폐지 등)로 인해 해지할 경우

#### 제 20 조 (신청서의 전자문서 보관)

계약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가입신청서 기타 서면은 '회사'가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제 4 장 차량관제단말 설치, 유지보수 등

#### 제 21 조 (설치작업)

- 1. 계약자와 '회사'는 차량관제단말의 설치작업 일정 및 설치 방법을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 2. 차량관제단말의 증감, 이전 등 변경작업이 필요할 때에는 차량관제단말 대금, 설치비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 3. '회사'는 설치작업 전후에 계약자 차량의 외관 및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4. 계약자는 차량관제단말의 설치작업을 위해 '회사'의 직원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에 대한 출입허용, 장애물제거 등 설치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및 운전자가 작업 일정 및 설치 위치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아니할 경우
  - ② 계약자가 설치비 등 설치작업에 따른 비용 부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 ③ 계약자가 동조 제 4 항에 따른 협조를 하지 아니할 경우

#### 제 22 조 (차량관제단말의 설치변경, 탈거 등)

- 1. '회사'는 차량관제단말을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설치 후 그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2. '서비스' 개시일 이후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차량관제단말의 설치위치 변경(탈거 후 동일장소 재장착, 이하 '이전설치')이나 탈거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안내된 차량별 이전설치비용과 탈거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단, 차량 정비 시 '차량관제단말'의 탈거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두며, '회사'는 정비 내역 증명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3. '서비스' 개시일 이후 고객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작업이나 출장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제 23 조 (유지보수)

- 1. '회사'는 약정기간 동안 차량관제단말의 무상 유지보수를 실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지보수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차량관제단말이 훼손된 경우
  - ② 계약자에 의한 충격, 이전, 불량접속 등으로 차량관제단말이 훼손된 경우
  - ③ 계약자의 분해, 개조, 수선 등이 차량관제단말 고장의 직접 원인인 경우
  - ④ 기타 계약자의 잘못으로 차량관제단말이 분실, 훼손된 경우
- 2. '회사'는 약정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 하자의 수리, 보완, 교체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기기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유지보수는 '회사'가 지정한 협력업체에 접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지정 협력업체를 고지합니다.
- 4. 계약자의 잘못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출장이 발생하는 경우, 차량관제단말별 유지보수 출장비는 계약자 부담입니다.

- 5. 본 조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실비정산하며, 계약자는 해당 유지보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해당 비용을 '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6. '회사'는 계약자가 별도 구매한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5 장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

#### 제 24 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계약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 15 조의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기 전에 계약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 제 25 조 (서비스 이용요금)

- 1. 서비스 이용요금은 별표 1 요금제 구성에 따릅니다.
- 2. EV 배터리 교체 서비스 발생시, 자기부담금은 수리비 총액의 20% (최소 20 만원 ~ 최대 50 만원)를 적용합니다.
- 3.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계약일로부터 계산하며, '서비스' 해지일은 이용일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 4. 1개월 미만의 요금은 '서비스'의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 5. '회사'는 '서비스' 제공조건의 변경,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계약자와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2025.03.13 이후 서비스 제공조건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6. 요금납입책임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요금의 100 분의 2 에 상당한 요금을 가산금으로 일할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 7. 기타 요금의 의의신청, 반환 등에 대한 문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처리 방침에 따릅니다.

#### 제 26 조 (서비스 제공)

- 1. '회사'는 무선통신망과 차량관제단말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이 불가능한 일부 지역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계약자의 차량에 차량관제단말이 부착되어, 서버에 정상적으로 위치정보가 수신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 제 27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중단)

-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계약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통보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종료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① 교통두절, 통신마비,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회사'의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③ 계약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 ④ 계약자가 지정한 요금납기일로부터 1 개월 이내 납입하지 않는 경우
  - ⑤ 계약자가 지정한 요금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부도, 휴폐업, 사망 또는 월발생요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한 경우
  - ⑥ 계약자의 파산, 도주, 행방불명 등으로 서비스이용요금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⑦ 기타 '회사'와 계약자가 특별히 약정한 경우
- 2.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중단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중단일의 7 일전까지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계약자는 제 2 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이의신청 내용확인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 4. '회사'는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단, 실효 후 부활 시 계약자는 이전에 미납된 보험료 모두 완납을 해야 하며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미납 기간동안 무사고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5. 시스템의 정기점검, 증설, 교체 등으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제 6 장 이용계약의 종료

#### 제 28 조 (이용계약의 종료)

- 1. 계약자와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상대방이 제 3 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③ 상대방에 대해 파산,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
- 2. 계약자와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둔 최고를 통해 그 시정 또는 이행을 구하고. 적절한 시정 내지 이행이 없는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작업을 거부한 경우
  - ② '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한 자가 청구하는 설치비, 출장비 등의 비용이 약정된 내용과 다른 경우
  - ③ 계약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④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관제단말의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 ⑤ 기타 상대방이 이용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3.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후 1 월 이내에 계약자가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② 계약자가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청약한 경우
  - ③ 계약자가 요금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도, 휴페업, 사망을 하거나 회생•파산 절차를 신청 또는 개시한 경우
  - ④ 계약자가 요금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의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 27 조 제 1 항 내지 제 2 항 규정을 준용합니다.

- 5. 계약자는 제 27 조 제 1 항, 제 2 항 이외의 경우에도 '회사'에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직접 '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창구 접수,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서비스'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차량관제단말 철거비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 채무를 전부 이행할 때까지 '회사'는 계약자의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6.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계약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9 조 ('회사'의 면책)

-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 ②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을 때
  - ③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 ④ 차량관제단말을 포함한 제반 장치의 조작이나 사용상 오류, 전원 꺼짐, 배터리 방전, 파손이나 이상작동 등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때
  - ⑤ 계약자가 가입시 작성한 가입정보의 변동이나 부실기재, 오류가 있었음에도 '회사'에 즉시 신고하지 않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 ⑥ 계약자의 비밀번호 관리부실이나 제 3 자가 부정사용한 때
  - ⑦ '서비스'의 해지 또는 정지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을 때
  - ⑧ 계약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제 10 조의 계약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 2. '서비스'는 웹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하여 계약자의 차량 위치정보 조회, 이동 경로 제공 등의 위치기반 편의 '서비스'이며, 인명이나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인명이나 재산의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30 조 (손해배상)

1. 계약자가 '계약'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위반한 계약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2.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계약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가 본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계약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약정한 손해배상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3. 본 조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 393 조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한합니다.

#### 제 31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1. '회사'와 계약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 2.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별표 제 1호: 기본 서비스 상품 구성

1. 기본요금제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사항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	<u>∸</u> 명 내용		※ 세부사항 별표 제 3 호 참조
	EV 배터리 교체보상	기본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 차량의 침수 등의 사고가
EV 배터리			발생하여 리퍼비시배터리 교체 필요 시(공임비 포함), 이를
교체			지원하는 서비스 (단, 배터리 성능 저하 등은 서비스에서
서비스			제외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20% 자기부담금(Min
			20 만원/Max 50 만원) 적용)
차량 관제	대시보드	기본	계약자가 소속된 회사의 차량들의 평균 안전점수, 실시간
			운행률 등 전반적인 관제 현황을 볼 수 있는 서비스
	관제현황	기본	차량의 속도, 배터리 전압 등의 상태와 현재 위치, 그리고
			이동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통계분석	기본	급가속, 급감속, 고속주행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을
			분석한 안전운전 점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운행일지	기본	계약자가 소속된 회사의 차량의 운행시간, 차량번호, 이동거리
			등 운행에 관련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 서비스 요금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	차종	서비스 납입방법	서비스 요금(만원)
법인	봉고 EV	월납	
화물	포터 EV	월납	

## 별표 제 2 호: 선택 서비스 상품 구성

1. 선택 서비스 상품은 아래 사항 중 택하여 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서비스 사항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명	내용	사항	서비스
EV 배터리 교체 서비스	EV 배터리 보증수리연장	선택	배터리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해 성능, 기능상 하자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수리하는 서비스 (단, 배터리제조사 무상보증에 해당할 경우 등은 서비스에서 제외)

# 별표 제 3 호: EV 배터리 교체 서비스(배터리 교체보상, 배터리 보증수리연장) 세부내용

#### <EV 배터리 교체보상 서비스>

- 1) EV 배터리 교체보상 서비스란 회사에서 'EV 배터리 교체 서비스'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계약자의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여 EV 배터리를 교체한 경우해당 EV 배터리 교체를 서비스 보상한도 내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는 1 사고당 1 회에 한하며, 사고가 발생한 EV 배터리는 회사가 지정한 지정 정비업체에 반납해야합니다.
- \* 1 사고당 1 회라 함은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차량에 장착된 고전압배터리를 리퍼비시 배터리로 한번의 교체를 의미하며, 다른 사고 발생 전 또 다른 리퍼비시 배터리로 교체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사고의 정의

- 1.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하여 피보험 고전압배터리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단,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책임으로 보상받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 2.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피보험 고전압배터리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 3.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로 인한 서비스 대상 고전압배터리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 4. 정격의 충전설비를 이용하여 서비스가입 자동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충전설비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 고전압배터리에 발생한 전기적 손해. 단, 배터리의 성능 저하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사고가 발생한 날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한 날 또는 지정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의뢰한 날 중 빠른 날을 사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 2) 1)에서 보장하는 EV 배터리 교체는 필요성 및 가능여부를 지정 정비업체와 회사가 판단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확정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진행 합니다.

- 3) 발생한 사고가 전손 등의 사고로 부득이 계약자가 다른 차량(EV 차량에 한함) 구매가 필요하여 회사가 동의한 후에 다른 차량을 구매하였다면, 아래에서 정한 'EV 배터리 구매비용' 보장한도 기준에 따라 1)에서 보상하는 교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단,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 EV 배터리는 회사가 지정한 지정 정비업체에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 전손 등 사고 후 타차 구입시 'EV 배터리 구매비용' 보장한도 기준 >

배터리 구분 <sup>주)</sup>	서비스 가입후 경과기간		
메디니 ㅜ군 '/ 	1 년이하 사고시	1 년초과 사고시	
신품 배터리	리퍼비시 배터리 가격	리퍼비시 배터리 가격	
리퍼비시 배터리	리퍼비시 배터리 가격	리퍼비시 배터리 가격	

- 주) 'EV 배터리 교체 서비스' 가입시점에 서비스 이용차량에 장착된 EV 배터리를 말합니다.
- 신품 배터리 : 신차 출시시점에 장착되었거나 제조사에서 신규로 제작한 EV 배터리로 보수, 수리 및 교체되지 않은 EV 배터리
  - 리퍼비시 배터리 : 기존 EV 배터리를 보수, 수리 및 교체 이력이 있는 EV 배터리
  - 4) 동 서비스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계약자 단독 또는 계약자의 임직원, 협력자, 수탁자 또는 승인된 대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하 '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5.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7. 고전압배터리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8. 고전압배터리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9. 서비스이용계약(또는 서비스증권)에 기재된 계약자가 소유하는 전기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서비스 대상 고전압배터리에 발생한 손해
  - 10. 서비스이용계약(또는 서비스증권)에 기재된 계약자가 소유하는 전기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서비스 대상 고전압배터리에 발생한 손해
  - 11. '계약자 등'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12.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제 3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용
- 13. 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14. 파손 등으로 의심되어 차량 진단 등 점검을 받았으나 1), 2), 3)에 따른 손해가 아닌 경우 그에 따른 점검비용
- 15. 서비스이용계약(또는 서비스증권)에 기재된 계약자가 소유하는 전기자동차의 변형, 개조 또는 그 과정과 연관되어 발생한 서비스 대상 고전압배터리의 직·간접 수리비용
- 16. 제조사에서 신차 출고 시 장착사양과 다르게 고객이 임의로 교체 장착한 부품으로 인한 서비스 대상 고전압배터리의 파손 및 그 부품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서비스 대상 고전압배터리 손해
- 17. 견인비용, 휴업손해, 대체비용, 교통비 등 직접적인 수리비용과 관련 없는 일체의 간접비용
- 18. 회사의 사전 승인 또는 지정하지 않은 정비업체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용
- 19.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보장대상이 되는 손해
- 20. 제조사 보증기간 동안 제조사 보증으로 처리되는 손해
- 21.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 22. 계약자가 사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

#### <EV 배터리 보증수리연장서비스>

- 1) EV 배터리 보증수리연장서비스란 회사에서 'EV 배터리 교체 서비스'에 가입하고, 동 서비스를 선택(추가) 가입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배터리 제조업체 등이 제공하는 무상보증수리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 대상 배터리에 대하여 제공하는 고장\*수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 \* 고장 : 서비스대상 배터리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 \* 배터리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무상보증수리에서 제외되었던 항목은 동 서비스에서도 제외
- 2) 1)에서 보장하는 서비스는 필요성 등을 지정 정비업체와 회사가 판단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확정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진행 합니다.
- 3) 동 서비스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계약자 단독 또는 계약자의 임직원, 협력자, 수탁자 또는 승인된 대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하 '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제 3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 3. 계약자 및 그 대리인의 사기, 부실고지 또는 은폐행위
- 4. 전쟁 또는 전쟁위협, 침입, 외국군대의 행위, 선전포고 여부를 불문하고 적대적인 시민전쟁, 혁명, 군대의 반란 또는 정권찬탈, 몰수, 국유화, 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한 재물에 대한 징발, 파괴, 또는 손실
- 5. 민중봉기, 폭동 또는 시민소요에 준하는 사태, 폭동, 계엄령 또는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구성된 기관의 행위
- 6. 검역소 또는 세관의 규제하의 압류 및 파괴행위,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기타 지방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의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손실, 또는 밀수품의 취급이나 불법적인 무역 또는 수송
- 7.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된 핵 폐기물에 의해 야기된 방사능오염 또는 이온화방사
- 8. 폭발성의 핵 조립시설 및 그곳의 핵 부품의 위험한 재물에 의한 방사능 물질, 독성물질,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재물
- 9. 지진, 분화, 해일,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
- 10. 이 서비스계약에서 보상하는 손실에 직접적으로 기인되지 않은 이 서비스계약의 서비스기간 동안에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유출, 대기오염, 수질오염
- 11. 환율, 세금, 이자, 또는 통화의 안정성에 있어서의 변화
- 12. 이 서비스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서비스 또는 보험(공제 포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 다른 서비스 또는 보험(공제 포함)계약에 의해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서비스계약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13. 서비스이용계약(또는 서비스증권)에 기재된 상품, 제조물을 제외한 다른 재물의 파손이나 훼손
- 14. 서비스 대상 배터리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의심되는 결함으로 인해 제품의 회수나 철수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이나 손실
- 15. 벌금, 과징금, 징벌적 벌과금
- 16. 제조사 무상보증수리에 적용될 수 있는 고장
- 17. 서비스개시일 이전부터 존재한 고장

- 18. 부품, 공임 등 직접 비용을 제외한 교통비, 운반비, 운휴 손실비, 유류비 및 기타 간접비용일체
- 19. 제조사의 무상보증수리 항목, 배출가스 규제 관련 부품, 서비스 캠페인, 리콜 캠페인,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수리하는 별도 항목
- 20. 보증제외 부품의 손상으로 인하여 보증대상 부품의 수리가 발생한 경우
- 21.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감각적인 불만사항 (가벼운 이음, 잡음, 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 감각 등)
- 22. 계약자가 임의로 교체 장착한 부품의 고장 및 그 부품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고장
- 23. 도난으로 인한 수리사항 발생시나 사고로 인한 수리 발생시
- 24. 제조사에서 권장한 관리의 부족으로 인한 고장
- 25. 비포장 도로 및 과속방지턱 등 도로상 돌출부위와의 충돌로 인한 차량하체의 파손 및 해당파손에 기인하는 고장인 경우
- 26. 수리서비스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 27. 경주, 등판능력, 속도 및 내구시험으로 발생된 고장
- 28.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임의 변조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9. 자동차보험이 보장하거나 보장하였을 수리 발생시
- 30. 통상적인 소모·마모 및 그에 따른 수리비용
- 31.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 32. 계약자가 사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